

영등포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1. 28.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8. 1. 18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 제정(제안) 이유

- 영등포구를 고품격 디자인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 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부터 제11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 원 장(1인) : 구청장
 - 부위원장(2인) : 부구청장, 민간 부위원장(위원중에서 호선)
 - 위 원 : 관계공무원, 건축, 시설물, 디자인, 조명 및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임 기 : 2년
- 회의개최
 - 상정 안건 수에 따라 분야별로 수시 개최
 - 분야별 안전 심의자문위원 선정 회의
- 심의내용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물의 야간경관조명 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민간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시설물, 디자인, 조명 및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회의는 상정 안건수에 따라 필요시에 개최하도록 하며, 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의 야간경관 조명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1. 28.

보 고 자 : 이 남 식